

「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장난감도서관 관리부서 일원화로 시민의 편의성 제고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규정 명시(안 제5조)
-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가입 규정 명시(안 제8조)
- 센터 및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위탁 운영 기간 명시(안 제14조)
- 재위탁 규정 수정 및 삭제 (안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: 신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관리부서 일원화에 따른 조례 내용 개정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현재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은 총4개소로 3개소는 가족보육과 소관이고,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의 장난감도서관 ‘초록별’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관리부서가 나뉘어져 있음.
- 이에 시민의 불편과 혼란의 줄이고 관내 장난감도서관의 통일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장난감도서관을 더욱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